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86

발의연월일: 2024. 7. 4.

발 의 자:박 정·이용우·김태선

어기구・송옥주・김병기

이기헌 · 김정호 · 강유정

이학영 • 박해철 • 박홍배

민병덕 · 김성화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기준, 합계출산율이 0.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 각함. 원인 중 출산·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.

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, 이때 사실 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며,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, 최초 1일 유급에서 6일, 유급 6일로 하고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육아지원을 위한 그밖의 조치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확대하고,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를 도입하고, 육아휴직 및 육아

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자 함(안 제18조의2제1항·제3항, 제18조의3제1항, 제19조제1항·제2항, 제19조의5제1항)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청구할 수 없다"를 "사업주에게 고지할 수 없다"로 한다.

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(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한다)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"배우자 출산휴가"라 한다)를 고지하는 경우에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

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"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"를 "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,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"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"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"를 "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"로, "이를 허용하여야 한다"를 "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1년"을 "1년 6개월"로 한다.

다만,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한 후 15일이 지나면 사업주가 이

를 허용한 것으로 본다.

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"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"를 "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1년"을 "1년 6개월"로 한다.

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"를 "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휴직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- ② 제18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- ③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
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
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
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"배
우자 출산휴가"라 한다)를 청
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
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
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

- ② (생략)
-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 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.

④・⑤ (생 략)

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사업 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"난임치료휴 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 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 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

개 정 안

에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<u>①</u>
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(사
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한다)
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
"배우자 출산휴가"라 한다)를
고지하는 경우에 15일의 휴가
를 주어야 한다.
② (현행과 같음)
③

- © -----
- -----<u>사업주에게 고지할</u> 수 없다.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----

----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, 사용한 휴가 기간 은 유급으로 한다. ----- 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한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위하여 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<u>1년</u> 이 내로 한다.
- ③ ~ ⑥ (생 략)
- 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<u>8세</u>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

,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육아휴직) ①
<u>12세</u>
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
ठॅ}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
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
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육아휴직
신청을 한 후 15일이 지나면
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것으로
<u>본다.</u>
② <u>1년 6개</u>
<u>월</u>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① <u>12세</u>
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
<u>하</u>

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 여야 한다. 다만, 대체인력 채 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②·③ (생 략)

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이내로 하다. 다만,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기간 이내로 한다.

⑤ ~ ⑦ (생 략)

제19조의5(육아지원을 위한 그 저 밖의 조치) ① 사업주는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 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4
<u>1년 6개월</u>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5(육아지원을 위한 그
밖의 조치) ① <u>12</u>
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
<u>이 하</u>

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